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검사 항목과 위해 해외화장품 정보 공표 절차 신설
- 소비자 구매·사용 실태 및 피해사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하였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5.4.1., '26.4.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위해 종류나 내용 등

**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3-719-3412)

